

《2023. 7월 1차》

#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청탁금지법 사례(보조금 관련 부정청탁)

청렴<sup>韓</sup> 수원

### 관련 내용 및 사례

#### ○ 관련내용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 사례로 보는 보조금 관련 부정청탁

-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 A가 보조금 배정 관리·감독 공무원인 B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공무원 B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A는 본인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 B가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 C에게 요청하였고, 부서장 C는 부하직원인 B에게 민간인 A의 법인이 보조금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결국 B는 C의 지시를 이행 하였음 ⇒ 이 경우 A, B, C의 청탁금지법상 제재는?

A :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제3항)

B : 처음에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올바른 처리이나(법 제7조제1항), 나중의 지시 이행은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C : 결재선상에 있는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한편, 부하 공무원 B에게 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될 수 있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등은 형벌, 과태료 외에 징계대상에도 해당

부조리  
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 감사관 핫라인(☎ 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